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157번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찬성자 27명)
- 발 의 일 : 2024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지원 사업 대상에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10.23. ~ 10.2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자녀 →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음(안 제7조제1항제7호).
- 안 제7조제1항제7호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서울런)의 대상을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지원 사업)</p> <p>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p>	<p>제7조(교육지원 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8. (현행과 같음)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 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10. (현행과 같음)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12. (현행과 같음)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본 조례 제7조는 온라인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사업(서울런)의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런 개요 〉

□ 사업개요

- 대 상 : 만6세(취학연령)~만24세(청소년 상한 연령), 소득 또는 자격 기준 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는 72%↓)
 - 자격기준 :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독립유공자(본인, 배우자, 6대손), 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 아동·청소년, 市 운영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사 업 비 : 16,229백만원(콘텐츠 10,528, 멘토링 5,044, 플랫폼 운영 657)

○ 사업내용 :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무료 지원

□ 주요 추진실적

- ① 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런 확산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로, 서울런 대상자 확대 시행 ('24.7.1.)
 -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은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 시행 ('24.10.1.)
- ② 교육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폭넓은 학습 선택권 보장
 - [강의제공] 선호도 높은 교과·비교과 21개 업체 중, 최대 5개 선택 후 무제한 학습
 - [자체제공]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온라인 교육 보완
 - [교재지원] EBS 교재 5권 포함, 기본 10권 및 최대 30권까지 지원 확대
 - [AI 학습진단] EBS 문항 기반 학습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학습관리
- ③ 멘토링 다변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서울형 교육멘토링 확산
 - [멘토 다변화] 멘토단 구성 다변화를 통해 멘토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품질 강화] AI 학습진단 툴 활용해 취약점 집중 보완하는 '최적 멘토링' 제공
 - [선순환 확대] 우수·선순환 멘토 확대 등 멘토단 관리체계 강화
- ④ 서울런 회원·졸업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만남의 장 마련
 - 서울런 3주년 기념, 회원 및 졸업생 등이 함께하는 행사 개최로 유대감·소속감 제고

〈서울런 이용자 현황1〉 ('24.10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인원(명)	비율(%)	비 고
합 계		29,693	100.0	
제1호 및 제2호	중위소득 60% 이하 및 한부모가족	21,487	72.4	행안부 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동검증 구분 불가
제3호	다문화가족	4,169	14.0	
제4호	학교 밖 청소년	3,619	12.2	
제5호	북한이탈주민	64	0.2	
제7호	국가보훈대상자	258	0.9	
제8호	가족돌봄청년	0	0.0	
제9호	가정폭력 등 피해시설 입소 학생	3	0.0	
제10호	건강장애 등 학생	37	0.1	
제11호	아동보육시설 학생	56	0.2	관외아동 가입현황임 (관내아동은 제1호에 해당되어 구분 불가)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작성

-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런 이용자는 총 29,693명으로, 본 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호별 이용자를 확인한 결과 제1호 및 제2호의 '중위소득 60% 이하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21,487명(72.4%)으로 전체 이용자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3호의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4,169명, 14.0%), 제4호의 '학교 밖 청소년'(3,619명, 12.2%) 순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1)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제1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을 지원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제6호(다자녀가족의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서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안 제7조제1항제7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자녀 → 손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본 개정안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2024년 11월말 기준)는 총 136,300명(본인 88,977명, 유족은 47,323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경우 대표유족*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 6세에서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본 개정안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인원 파악이 불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이 의결·공포될 경우 서울권 가입 대상이 급증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재정분석담당관 작성)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부재로 객관적인 추계 및 자체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밝히고 있음.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³⁾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 1인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본인	대표유족
2024년 11월말	136,300	88,977	47,323
2023년	137,323	91,199	46,124
2022년	139,503	94,813	44,690
2021년	141,162	98,099	43,063

〈출처 : 국가보훈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 정리〉

※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⑦ ~ ⑧ 삭제

○ 둘째, 본 조례 제7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서울런)의 근거 조항으로,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까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공헌에 대한 예우 등)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교육지원 대상을 각 특성에 맞게 세분하거나, 지원 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각 법령에서의 취약계층 정의는 별첨1. 참조 바람.

○ 셋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자녀 →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대상이 되며, 본 개정안의 의결·공포 후에도 사회보장 협의 없이 대상의 확대는 어려운바, 사회보장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본 조례 제7조제1항 제1호(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와 제6호(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미완료 되어 제1호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청소년’만을 지원하고 있고, 제6호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서울런의 실제 지원 대상과 조례상 지원 대상이 달라 시민들에게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런 사회보장제도신설 추진 경위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신청 : '21. 4. 30.
- 최초 신청(교육정책과),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결과 : '21. 6. 16.
-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협의대상 아님'(21. 8월 ~ '22. 8월).
- '서울런' 사업 지속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제출 : '22. 6. 3.
- 소득기준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 자격기준 대상 :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완료(조건부 협의) : '22. 8. 30.
- 일정기간('22.8월~'24.8월) 사업 추진 후,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 판단
- '서울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24. 6. 4.
- **소득기준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 **자격기준 대상 :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 국가보훈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자녀), 건강장애학생·요보호학생, 관외거주 서울시 운영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가족돌봄청년**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결과 통보 : '24. 6. 24.
- **대상 확대 및 조건부 기간 연장 (기존 ~ '24.8월에서 ⇒ '26.8월로 연장)**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손(자녀 → 손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희생·공헌자”를 기준으로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달리,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기준으로 그 손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별첨1.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제2호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제5호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

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